

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.

-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“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나라” 구현 선결과제 -

- ▶ 이재명 정부 첫번째 「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」 개최
- ▶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뿐 아니라 SNS 계정도 차단
- ▶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만으로도 추심 중단
- ▶ 기발생한 피해금에 대한 국가의 직접 환수 및 피해자 환부 근거 마련 추진

- 정부는 9.11일 국무조정실 2차장(김용수) 주재로 이재명 정부 첫번째 「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」를 개최하였다.

- (일시/장소) 9.11.(목) 10:00~11:00 /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
- (참석자) 국무 2차장(주재), 금융위원회, 경찰청, 법무부, 대검찰청, 과기정통부, 방통위, 국세청, 금감원, 법률구조공단, 서민금융진흥원, 방심위, 서울시, 경기도

1. 개최 배경

- 정부는 서민의 재산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‘22.8월부터 범정부 TF를 운영하여,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.
- 그럼에도 불법사금융은 범죄 형태를 변형해 가며 국민의 생활속에 지속 확산되는 상황*이다.

* 금감원 불사금 피해신고센터 신고건수 : (‘22)10,350 → (‘23)12,884 → (‘24)14,786 → (‘25.1~6) 7,882

<최근 불법사금융 세력의 영업행태 변경 실태>

- ①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·전화영업 대신, 온라인(포털사이트 광고, SNS 등)을 통한 비대면 영업 증가
- ② 등록대부업 명의를 끼고 실제로는 불법사금융을 제공하는 기망성 거래 발생
- ③ 채무자의 신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출계약 시점부터 각종 불법 정보·서류* 등을 징구하고, 추후 추심시 채무자 협박 수단으로 악용

* (예) 계약시 얼굴사진 요구 및 지인 연락처 확보 → 연체시 나체사진 요구·지인연락 등을 통해 채무자 압박

2. 새 정부의 향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

- 정부는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가 전개되는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, 각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.

1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차단의 효율성 제고

<1단계> 피해예방·차단

- 취약계층 대상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 확대
☞ 서민층의 불사금 이용유인 해소
- 온라인 플랫폼사의 불법금융광고 차단 자율규제 / 행정청의 불법금융광고 사후차단 강화
☞ 서민층을 불사금으로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 근절
-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알선 차단
-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/SNS 계정 차단
☞ 범죄에 사용된 연락수단을 신속차단하여 재발 방지

- ①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자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및 민간서민금융 공급을 더욱 확대한다.

-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불사금 이용 유인이 큰 저신용층 맞춤형 대출인 “불법사금융예방대출”과 “최저신용자 특례보증” 공급을 적극 추진중이다.

상품명	이용가능 대상	1인당 대출한도
최저신용자 특례보증	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자 중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10% 이하인 자	1000만원* * 최초500만원 + 추가500만원
불법사금융 예방대출	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인 자	100만원* * 최초50만원 + 추가50만원 ※ 非연체자의 경우 100만원 한 번에 대출

- ‘26년도에는 정부재정 정책서민금융* 공급규모를 2.63조원으로 확대하여 (‘25년 : 2.33조원) 취약계층의 자금수요를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.

* 최저신용자특례보증, 햇살론유스, 햇살론15 등 포함

- 저축은행에 햇살론¹⁾, 민간 중금리대출²⁾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금융공급 확대 노력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.

1)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중 산출시 햇살론에 1.5배 가중치 부여

2) 저축은행의 대출/예금비용(100% 이내 의무) 산정시 민간중금리대출을 대출액에서 일부 제외
(☞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을 거쳐 빠르면 '25.4분기부터 시행)

②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는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·정보에 대한 감시·차단을 지속 강화한다.

- 온라인 플랫폼사들의 불법금융광고·정보 차단 자율규제* 운영실태를 점검하고, 未도입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마련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.

* 현재 카카오·네이버·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사들은 자사 포털상에 등재되는 불법 금융광고·정보 차단을 위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운영중

- 이미 게재된 불법금융광고·정보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(요청)-방심위(심의) 간 심의연계시스템을 통해 시정요구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.

-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신속 차단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즉시 시정요청*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(☞ '26년 1/4분기중 「정보통신망법」 개정안 발의 추진)을 추진할 계획이다.

*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요청과 함께 방심위에 불법정보 심의도 요청

③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가 불사금융업자의 대출소비자 접근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이트 상의 개인정보 판매, 개인정보 유출 등을 철저히 감독한다.

- 대부중개사이트가 개정 대부업법*('25.7.22. 시행)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금융당국이 현장점검하고, 위반사항 발견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.

* ① 누구라도 대부이용자의 개인정보 판매시 형사처벌 (징역5년 or 벌금2억원 이하)
②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신청시,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구비 의무

④ 이미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, SNS 계정 등은 즉시 차단하여 피해 지속 및 재발을 방지한다.

- 개정 대부업법(25.7.22. 시행)에 따라, 불법사금융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관계기관 요청을 거쳐 과기정통부장관이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.

- 불사금융업자가 주된 연락수단을 SNS로 변경하는 규제 회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,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주요 SNS 계정에 대해서도 플랫폼사(카카오톡, LINE) 자율규제('25.6월~)를 통해 이용중지 조치를 가동중이다.

※ 불법사금융 이용 카톡계정 이용중지 운영 프로세스(카카오톡, LINE)

☞ ①카카오톡·라인 어플(신고하기 기능) 및 ②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

- 앞으로 카카오·라인 외에 다른 주요 SNS 계정까지 자율규제 확대를 유도하여 불사금융업자의 규제회피 수단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.

2 피해 발생시 피해자 보호 강화

<2단계>

피해 발생시 피해자 보호

- 채무자대리인 선임 확대 및 추심인 앞 통보방법 다양화
☞ 채무자를 불법추심의 고통에서 구제
-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추심연락 지속시 형사처벌 추진
☞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
- 피해신고시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 강화
☞ 피해자를 추심인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

1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확대하고 추심인에게 선임 예정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채무자를 불법추심의 고통에서 신속히 구제한다.

-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채무자대리인* 서비스(법률구조공단)를 지원중이다. 최근 추심행위가 주로 SNS를 통해 이루어짐을 반영하여, '24.11월부터는 SNS를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**되었다.

*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에 대응하는 대리인 →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채권자의 채무자 직접추심이 금지됨(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§8의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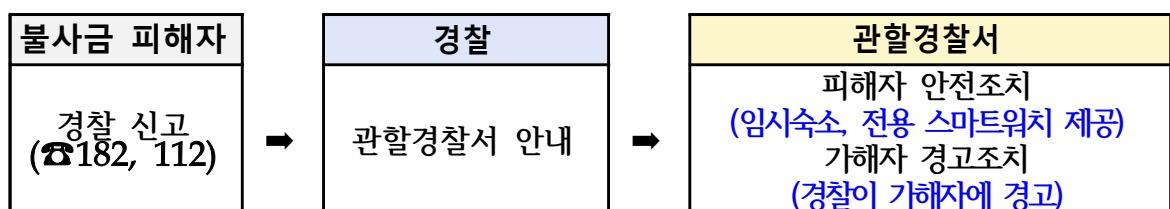
** 연도별 채무자대리인 지원실적(건) : ('21) 4,841 ('22) 4,510 ('23) 3,249 ('24) 3,096 ('25.1~7.) 5,241

- 앞으로는,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선임예정 사실을 구두 또는 문자로 사전통보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즉시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.

2 추심인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지속 연락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(☞ '25년 하반기중 「채권추심법」 개정안 발의 추진)이 가능하도록 하여 억제력을 강화할 계획이다.

3 추심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, 경찰 신고 후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 및 가해자 경고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※ 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절차 및 내용



3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 확대

<3단계> 범죄수익 환수· 피해자환급	▪ 反사회적 대부계약 원리금 무효, 그 외 불사금 이자 무효 ➡ 피해자 피해구제 권원 확보, 불사금 공급유인 억제 ▪ 무효화소송 지원, 국가몰수를 통한 직접 피해자 환급 추진 ➡ 불법사금융 피해금액의 실제 환수 지원 ▪ 피해자 앞 금융, 고용, 복지 종합지원 ➡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경제적 재기 지원
--	---

- ① 대부업법 개정(25.7.22. 시행)으로 불법사금융 계약의 이자 또는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*된 만큼, 피해자가 불사금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 또는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한다.

* ① 反사회적 대부계약(폭행, 협박 등 원인 체결), 年 60% 초과 이자계약 : 원리금전체 무효
② 기타 불법사금융계약 : 이자 무효

- 피해자가 금감원에 채무자대리인을 신청*할 때 불법대부계약 무효화소송 상담도 가능하도록 하고, 특히 중·저소득 채무자(=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)의 경우 무효화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하도록 한다.

* [신청 방법] 금감원 “불법사금융 지킴이” 사이트 접속 → “불법사금융 피해구제” 클릭
→ “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” 배너 클릭

- ② 나아가, 피해자가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.(☞ ‘25년 하반기중 「부패재산몰수법」 개정안 발의 추진)

- ③ 피해구제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금융, 고용, 복지, 법률 등 다양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한다.

- 8월부터 개시한 ‘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’에 따라,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고용(취업지원)-복지(생계비 지원)-금융(정책서민금융, 채무조정) 등을 종합 상담받을 수 있다.

- 나아가 금감원-서민금융진흥원-신용회복위원회 간 지원대상자 정보 연계(‘25.12월 예정)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감원에 피해신고를 하면 긴급생계자금 및 금융권 채무조정 등도 신속히 지원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.

4 범죄세력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

<4단계> 범죄세력 수사 및 처벌

-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건에 대한 경찰 전담수사팀의 신속 수사 추진
- 검찰은 불법사금융 사범에 대한 엄벌 구형

- ① 경찰은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운영('24.11월~) 하여 불법사금융 범죄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검거 실적*이 지속 높아지고 있다.

* (불법사금융범죄 검거건수) ('23년) 1,404 ('24년) 1,977 ('25.1~7월) 1,934

- 앞으로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, 국민들이 범죄 사례를 숙지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도록, 범죄사례 및 예방방법을 안내하는 보도 자료도 수시로 배포할 계획이다.

- ② 대부업법 개정('25.7.22.)에 따른 법정 최고형량 상향* 및 내부 구형기준 상향에 따라 검찰도 불법사금융 범죄세력에 대해 엄격한 형량을 구형하여 엄벌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* (미등록영업) 징역 5년, 벌금 5천만원 이하 → 징역 10년, 벌금 5억원 이하
(정부·금융기관 사칭) 과태료 5천만원 이하 → 징역 5년, 벌금 2억원 이하
(최고금리) 징역 3년, 벌금 3천만원 이하 → 징역 5년, 벌금 2억원 이하

◇ 불법사금융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국정목표인 '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' 달성의 핵심 선결과제

⇒ 정부는 앞으로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, 현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지속 발굴할 계획

<붙임>

1. 불법사금융 피해**대응**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
2. 불법사금융 피해**예방**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정태호 (044-200-2190)
		담당자	사무관	김태원 (044-200-2192)
	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	책임자	과 장	임형준 (02-2100-25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상록 (02-2100-2513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	책임자	과 장	신대식 (044-202-6650)
		담당자	사무관	남지은 (044-202-6651)
	법무부 형사기획과	책임자	과 장	신동환 (02-2110-3547)
		담당자	검 사	이윤석 (02-2110-3718)
	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	책임자	과 장	김우석 (02-2110-1560)
		담당자	사무관	박상현 (02-2110-1567)
	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	책임자	과 장	박찬우 (02-3150-2037)
		담당자	계 장	진우경 (02-3150-2763)
	대검찰청 형사2과	책임자	과 장	김수민 (02-535-4364)
		담당자	수사관	이석호 (02-3480-2855)
	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	책임자	과 장	최지은 (044-204-3601)
		담당자	사무관	손태빈 (044-204-3617)
	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	책임자	국 장	이행정 (02-3145-8270)
		담당자	팀 장	윤동진 (02-3145-8272)
			팀 장	최승록 (02-3145-8129)
	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국	책임자	국 장	송경용 (02-3145-8410)
		담당자	팀 장	신동호 (02-3145-8412)
	서민금융진흥원 금융소비자보호부	책임자	부 장	윤석민 (02-2128-8320)
		담당자	팀 장	배성훈 (02-2128-8272)
	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	책임자	부 장	백영종 (054-810-1061)
		담당자	과 장	김근태 (054-810-1062)
	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	책임자	과 장	김명선 (02-2133-5360)
		담당자	팀 장	송태림 (02-2133-5374)
	경기도 지역금융과	책임자	과 장	최정석 (031-8008-6125)
		담당자	팀 장	김정아 (031-8008-6126)
		담당자	팀 장	장영미 (031-8008-5034)

- ◆ “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피해발생 시 ☎112로 신고하세요”
- ◆ “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경우,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세요(☎1332)”
- ◆ “도움의 대가로 금전보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”
- ◆ “금감원 공식 사이트(‘불법사금융 지킴이’)를 이용하세요”

가. “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피해발생 시 ☎112로 신고하세요”

☐ ☎112 전화 한 통이면 **피해신고, 범죄피해자 안전조치, 추심중단 경고** 등 필요한 피해대응조치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음

☐ 피해자의 ☎112 신고시, 경찰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종합하여 공통적으로 안내

* 긴급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 182 민원센터로 연결하여 안내

< 세부 안내내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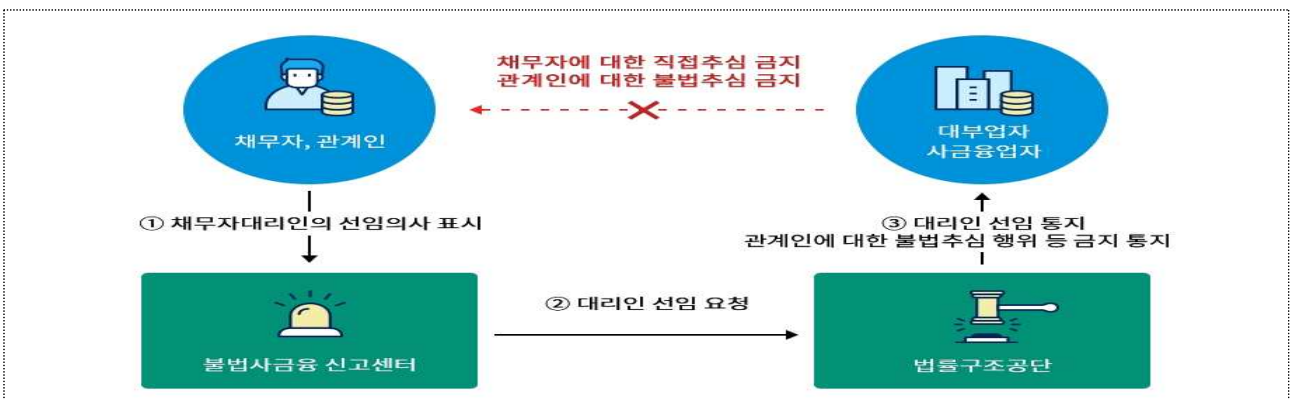
- 1] **피해 발생시 신속히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**해 주시기 바람
 - 경찰서별로 불법사금융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으며, 경찰서 사건접수 시 해당 팀에서 피해신고 처리와 함께 상세한 대응요령을 안내해 드림
- 2] **피해자가 동의하면, 경찰이 불법사금융 피의자에게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도록 구두·서면 경고를 해드릴 수 있음**
- 3] **피해신고를 하면, 경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해드릴 수 있음**
 -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스톱킹·협박 등의 2차 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상황에 따라 임시숙소, 스마트워치(위급상황 시 112긴급신고 및 위치정보 전송) 제공 등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드림
- 4] **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(☎1332),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(☎1577-1701) 등을 통해 보다 종합적인 피해구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**
 - **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**
 - 피해예방 및 구제방법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고, ①대출 또는 ②법률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는 ①정책금융상품, ②채무자대리인 담당기관을 연계
 - **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**
 - 원스톱 솔루션 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피해자 안전조치부터 법률지원·경제적지원·일상회복까지 종합서비스를 상담·지원받을 수 있음
 - ※ ▲범죄피해구조금 ▲치료비·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▲피해자 국선변호사·법률상담 (법률지원) ▲스마일센터 등(심리치유) ▲임시숙소·주거지원 등

나. “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경우,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세요(☎1332)”

- ☐ **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채무자대리인 신청이 가능 → 선임시 추심연락 중단 가능**

<신청방법> 불법사금융 지킴이 → 피해구제 →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

- ☐ **(신청방법)** ‘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→ 피해구제 →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제도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
- 전화 신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(☎1332)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을 통해 가능
- ☐ **(지원내용)**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①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고,
- 최고금리 초과 대출,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응하여 ②반환청구·손해배상 소송, ③개인회생·파산 등을 대리
 - 또한,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, 소송 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상담 제공



다. 피해자가 직접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

① “도움의 대가로 금전보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”

-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하여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, 수수료를 받고 잠적하는 사례 등 발생
- 금감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안내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정보를 발령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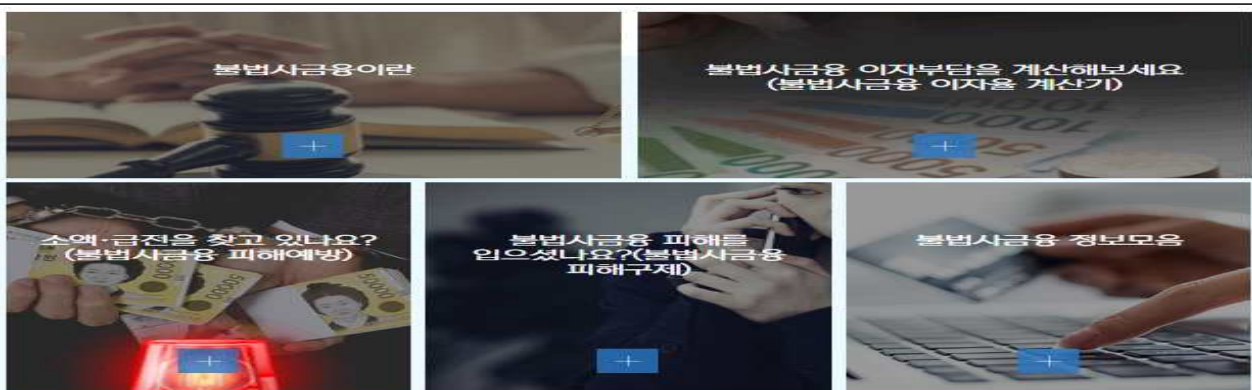
* 불법사채 해결 또는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에 주의하세요
(‘24.9.3., 금감원·대한변호사협회 공동)

< 참고 :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>

- ▶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!
- 불법사채 솔루션업체의 수수료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고 피해발생시 경찰(☎112)에 신고하시거나 금감원(☎1332) 또는 대한변호사협회(☎02-3476-4000)에 문의

② “금감원 공식 사이트* (불법사금융 지킴이)를 이용하세요”

※ 포털사이트에서 “불법사금융 지킴이” 검색시 “금융감독원” 로고와 함께 표시되는 “불법사금융 지킴이” 사이트가 정식사이트이며,
금전 등 포털사이트에서 대출관련 키워드 검색시 전면 노출 추진



<접속방법> ① 포털검색 → 불법사금융 지킴이 ② 금감원 홈페이지 → 민원·신고 → 불법사금융 지킴이

-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시 대응방법 안내를 위한 전용 사이트 “불법사금융 지킴이” 오픈(12.17.)

< 주요 안내사항 >

- ① (불법사금융 피해유형) 최고금리(연 20%) 초과, 불법 채권추심, 채무자 앞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수취 등
- ② (피해예방 방법) 이자율 20% 초과여부 계산, 등록대부업체 여부 조회, 정책 금융상품 이용상담 연계 등
- ③ (피해구제 방법) 온라인 제보·신고, 채무자대리인(무료변호사) 신청, 1332(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) 상담연계 등 가능

- ◆ “급전이 필요한 경우, 우선 서민금융진흥원(☎1397)의 정책금융상품을 확인하세요”
- ◆ “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, 불법사금융이 아닌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하세요”
- ◆ “어떤 대출이든지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”

가. “급전이 필요한 경우, 우선 서민금융진흥원(☎1397)의 정책 금융상품을 확인하세요”

- ☐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심사만 거치면 소액생계비대출, 최저신용자특례보증, 햇살론15 등을 이용 가능

<최저신용계층 대상 3대 정책금융상품 개요>

상품명	이용가능 대상	대출한도
햇살론 15	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and 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인 자	1,400만원
최저신용자 특례보증	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자 중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and 신용평점 하위 10% 이하인 자	1,000만원* * 최초5백만원 + 추가5백만원
불법사금융 예방대출	연소득 35백만원 이하 and 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인 자	100만원* * 최초50만원 + 추가50만원 ※ 非연체자의 경우 100만원 한 번에 대출

나. “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, 불법사금융이 아닌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하세요”

- ☐ 정식 대부업체 이용시 최고금리 위반, 불법과잉추심 등 불법행위 예방 가능

- ☐ 우선, 해당 업체가 정식 대부업체인지를 확인

- 정식 대부업체는 홈페이지 등에 금감원 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부여 받은 고유 등록번호를 게재*하니, 이를 확인 필요

* [예시] 2016-금감원-XXXX(대부업), 2017-경기성남-XXXX

- 단, 등록번호가 위조되거나 타인에게 대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, 반드시 금감원 “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*” 사이트를 통해 업체 등록번호, 전화번호 및 대표자명이 동일한지 확인

※ 포털사이트(Naver, Google)에서 “불법사금융 지킴이” 검색 → “불법사금융 피해예방” → “등록대부업체 조회”에서 업체명 조회시 등록번호가 나오는지 확인

□ 정식 대부업체인 경우, 계약상 금리가 법정최고금리(연 20%)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

○ 법정 최고금리는 “연간” 기준이므로, “월 10%” 등 연환산 실질금리가 20%를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불법임에 유의 필요

○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실질금리가 20%를 초과*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

* [예시] 100만원을 1년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20%를 징구하고 80만원만 빌려줄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25%임(대출원금 80만원, 연간이자 20만원)

다. “어떤 대출이든지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”

① SNS로 대부계약 체결	☞ <u>제도권 금융회사는 절대 SNS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!</u> (카카오톡, 텔레그램, 인스타 등 SNS로 대부계약 체결은 모두 불법!)
② 대부계약 내용에 이자율 누락	☞ <u>대부계약서에 반드시 연이자율, 연체시 이자율 작성을 요청하세요!</u> (연이자율이 법정최고이자율 20%를 초과하면 모두 불법입니다. 금감원(1332)에서 이자율을 계산해 드립니다)
③ 담보로 지인 연락처 요구	☞ <u>대부계약시 담보 조건으로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면 절대 주지 마세요!</u> (연체시 지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대부사실, 지인 개인 정보 제공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.)
④ 초고금리 소액거래 유도 후 연체시 고액 연장비 요구	☞ <u>일정기간 대부거래(예: 30만원 대출, 1주일 후 50만원 상환)가 쌓여 신용도가 확인되면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!</u> (소액 대부거래에서 수천~수만%의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고, 연체시 지인 연락처 제공 등 약점을 이용하여 고액 연장비를 요구합니다.)
⑤ 온라인대부중개 사이트에서 불법업체가 연락	☞ <u>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대부업체랑 전화할 때 제일 먼저 대부등록번호를 물어보세요! 알려주지 않으면 모두 불법업체입니다!!</u> (대부등록번호를 받아서 금감원(1332)에 연락하면 확인해 드립니다.)

⇒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중홍보 추진